

##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학생회 세칙 제01호]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이하 "이 세칙"이라 한다)은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학생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에 따라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학생회 선거가 본회 회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 ① 이 세칙은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학생회 선거(이하 "선거"라 한다)에 적용하며 조항에 따라 문과대학 소속 학과 학생회 선거(이하 "과선거"라 한다)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
- ② 과선거는 이 세칙을 준용할 수 있다.
- ③ 문과대학 동아리연합회 선거에 관한 모든 사항은 「문과대학 동아리연합회칙」에 따른다.

#### 제3조(선거시행원칙)

- ① 문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이하 "문선관위"라 한다)와 각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이라 한다)는 본회의 회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생회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문선관위와 각 선본은 선거를 보통선거·직접선거·비밀선거 및 평등선거의 원칙에 따라 민주적 절차와 내용을 준수하여 진행해야 한다.
- ③ 문선관위는 선거를 시행함에 있어서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고, 선거시행세칙을 보편타당한 관점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 ④ 문선관위와 각 선본은 선거에 쓰이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며 선본 간의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⑤ 선거공영제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모두가 평등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선거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⑦ 세칙은 문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시행세칙 안이 후보 등록된 각 후보의 선거운동본부장의 합의에 의해 효력을 발휘하며, 각 선본의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하 "선본원"이라 한다.)들은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
- ⑧ 선본이 본 시행세칙에 있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주의", "경고" 조치 등 그에 합당한 제재를 받는다.

#### 제4조(선거의 시기)

- ① 본회 선거는 통상적으로 2학기 말에 시행한다.
- ② 그 밖의 기구의 선거 시기는 각 기구의 회칙과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제5조(선거준비기간)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기간은 선거 공고일로부터 연서의 마감일까지로 하며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선거공고

---

- 2. 예비등록
- 3. 연서기간

#### 제6조(선거기간)

- ① 선거기간은 입후보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일까지로 하며 다음 각 호로 구성 한다.
  - 1. 입후보 등록 및 공고
  - 2. 유세기간
  - 3. 투표기간
  - 4. 당선공고
  - 5. 이의제기 기간
  - 6.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
- ② 문과대학 운영위원회(이하 "문운위"라 한다)는 입후보 등록 마감일의 7일 전까지 상세한 선거기간을 결정한다.

제7조(선거운동본부·후보자의 공정경쟁의무) 선본에 속한 후보자와 선본원은 선거운동을 할 때에 이 세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정책이나 후보자의 의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언론단체의 공정보도의무) 본회의 언론단체는 선본 및 후보자의 의견, 토론회 등을 보도·논평하는 경우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 제9조(세칙 밖의 판단)

- ① 이 세칙에서 다루지 않는 의 판단은 문운위에서 결정한다.
- ② 문선관위는 제1항의 결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0조(선거권)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중 선거인 명부 작성일 기준 재학생과 문선관위가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 유권자 등록을 한 휴학생에게 선거권이 있다.

- 1.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소속 학과를 제1전공으로 하는 학부생
- 2.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인문계열 학생

제11조(피선거권) 입후보 등록일 기준 해당 학기 포함 3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선거권을 가진 자에게 피선거권이 있다.

### 제3장 문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

제12조(문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위) 문선관위는 선거를 본회 회칙과 이 세칙에 따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문운위가 자격과 권한을 위임한 임시특별기구이다.

제13조(문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준) 문운위는 문운위원 중 4인 이상을 문과대학 선거관리위원(이하 "문선관위원"이라 한다)으로 선임하고, 재적단위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단위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한다.

제14조(문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① 문선관위는 문운위에서 문운위원 중 선임한 문과대학 선거관리위원장(이하 "문선관위원장"이라 한다) 1인과 문선관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② 문운위는 부득이한 경우 제13조를 준용하여 문선관위원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선관위는 24시간 이내에 문선관위원 추가 선임과 추가 선임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문선관위는 문운위의 심의를 거쳐 선거의 제반 업무를 집행하는 문선관위 집행부를 둘 수 있다.
- ④ 문선관위원은 선거를 진행하는 타 단위의 선관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15조(문과대학 선거관리위원의 임기) 문선관위원의 임기는 선임되었을 때부터 해당 선거가 종료할 때까지로 한다.

제16조(문과대학 선거관리위원장)

- ① 문운위는 문선관위원 중 1인을 문선관위원장으로 선임한다.
- ② 문선관위원장은 회의의 소집권한을 가지며, 회의를 주재한다.
- ③ 문선관위원장이 역할을 맡지 못할 경우에는 각 호의 절차를 따라 문선관위원장 직을 승계한다.
  1. 문선관위는 문선관위원장 궐위 시 24시간 이내에 회의를 자동으로 소집하고, 1인을 주재자로 선임한다.
  2. 문선관위는 문선관위원 중 1인을 문선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이를 문운위에 상정한다.
  3. 문운위는 선임된 문선관위원장을 재적단위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단위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한다.

제17조(문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의무와 역할)

- ① 문선관위는 선거의 진행을 총괄하고 후보자의 이의제기, 유권해석 및 기타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② 문선관위는 입후보 등록 마감일 7일 전까지 선거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문선관위는 본회 회원에게 각종 선거와 관련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 ④ 문선관위는 선거에 필요한 물품과 자료집을 제작하고 부착·배부하여야 한다.
- ⑤ 문선관위는 선본의 합동유세와 정책토론회를 기획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 ⑥ 문선관위는 제100조제6항에 따라 "경고"를 조치한 선본의 선거 포스터에 경고장을 부착하여야 한다.
- ⑦ 문선관위는 선거의 홍보와 안내를 위한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여야 한다.
- ⑧ 문선관위는 투표·개표 관련 실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선거인 명부 작성, 투표용지 및 투표함 제작, 투표소 설치, 게시판 설치, 개표 진행)
- ⑨ 문선관위는 특정 선본·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선거의 문화를 해치는 각종 선전물을 삭제 또는 철거할 수 있다.
- ⑩ 문선관위는 문선관위 회의 및 시행세칙 협의모임(이하 "시세협"이라 한다)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및 공개한다.
- ⑪ 문선관위는 문과대학 학생회비의 "선거공영비"를 통하여 선거의 관리를 위한 비용을 조달하며, 필요한 경우 선본으로부터 자료집·포스터 그 밖의 선전물 제작을 위하여 분담금을 받을 수 있다.
- ⑫ 문선관위는 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그 업무에 한정하여 각 선본으로부터 일정 수의 인원을 모집

할 수 있다. 다만, 문선관위는 해당 업무의 개시 최소 12시간 전까지 각 선본에 모집을 요청하여야 하며, 불응하는 선본에는 "주의"를 조치할 수 있다.

⑬ 문선관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혹은 판단이 어려운 을 중선관위의 자문을 구한 후 문운위로 이관한다. 문운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에 대하여 논의할 경우, 문선관위는 해당 선본의 후보자 혹은 선본장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단, 과선관위가 문선관위에 이관한 의 경우에는 문운위로 이관할 수 없다.

1. 선본 및 후보자의 자격박탈
2. 선거무효
3. 재선거
4. 선거일정의 조정
5. 당선무효
6.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중요한 사항

⑭ 문선관위는 과선관위의 구성을 보고받고, 과선관위의 선거관리를 지도·관리한다.

⑮ 문선관위는 과선관위가 이관한 을 책임 있게 논의하여야 한다.

⑯ 문선관위는 문운위의 의결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지닌다. 문선관위는 이관한 의결 사항에 대한 경위를 문서 형태로 작성하여 공개한다.

⑰ 문선관위는 과선관위의 구성이 불가할 경우 과선거를 직접 관리한다.

제18조(문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피선거권) 문선관위원회는 피선거권이 없다.

제19조(문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 의무)

- ① 문선관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문선관위원회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20조(문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 ① 문선관위 회의에서는 선거의 진행과 후보자의 이의제기, 유권해석 및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② 문선관위 회의에서는 이 세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거와 관련한 사항의 수치·수량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문선관위 회의는 문선관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한다.
- ④ 문선관위 회의의 의결은 만장일치를 지향하되, 불가피하게 표결하여야 할 경우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문선관위는 문선관위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한 문선관위원회의 확인을 거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문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 집행부)

- ① 문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 집행부(이하 "문선관위 집행부"라 한다)는 문선관위를 도와 선거의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
- ② 문선관위 집행부는 제17조의 제3항부터 제7항, 제9항, 제10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
- ③ 문선관위 집행부는 제17조제8항에 해당하는 문선관위원회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1. 봉인이 되지 않은 투표함에 접촉하는 행위

2. 기표용구에 접촉하는 행위
3. 투표용지에 선관위 직인을 찍는 행위
4. 선거인명부를 관리하는 행위

④ 문선관위 집행부는 문선관위원회가 임명하고 문운위에서 인준한다.

⑤ 문선관위 집행부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로 한다.

1.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소속 학과를 제1전공으로 하는 학부생
2.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인문계열 학생

#### 제22조(문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① 문선관위는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신촌캠퍼스 혹은 국제캠퍼스에 한 개 이상의 문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하 선관위 사무실)을 둘 수 있다.

② 후보자 및 선본원은 시세협 이외의 사유로 선관위 사무실에 입장할 수 없다.

#### 제23조(문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자격박탈)

① 본회의 회원은 문선관위원회가 제17조 또는 제19조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문운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본조 제1항이 발생하고 문운위의 재적위원 과반의 요구가 있을 경우 3일 이내에 문운위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문운위의 의장이 문선관위원회일 경우 문운위 회의는 요구 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에 자동으로 소집된다. 해당 회의의 개회 후 문운위는 문선관위원회가 아닌 문운위원 중 1인을 임시 의장으로 호선하여야 한다.

③ 문운위는 의 경중과 의도성을 파악하여 해당 문선관위원회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운위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문선관위원회를 교체할 수 있다.

#### 제24조(문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재구성)

① 문선관위원회의 과반이 자격을 박탈당할 경우 문운위는 문선관위를 해체하고 24시간 이내에 재구성하여야 한다.

② 문운위는 해체한 문선관위에 속하였던 사람을 문선관위원회로 선임할 수 없다.

③ 문운위는 문선관위를 재구성한 후 24시간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장 과 선거관리위원회

#### 제25조(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위) 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과선관위"라 한다)는 과선거에서 문선관위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그에 준하는 역할을 한다.

#### 제26조(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과선관위는 과 내 대표성을 가진 사람 중 과 선거관리위원장(이하 "과선관위원장"이라 한다) 1인과 과선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과 학생회는 과선관위를 입후보 등록 마감일 7일 전까지 구성하여 문선관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과 학생회는 필요할 경우 문선관위 구성 절차를 준용하여 과선관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 제27조(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 ① 과선거에서 문선관위와 동등한 역할을 이행한다.
- ② 과선관위는 판단이 어려운 을 문선관위로 이관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③ 과선관위는 이관한 에 대한 문선관위의 결정·지침을 이행한다.
- ④ 과선관위원에게 제15조, 제16조, 제17조를 준용할 수 있다.

#### 제28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이의제기)

- ① 과 학생회 선거운동본부(이하 "과선본"이라 한다)와 해당 단위의 회원들은 과선관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과선관위는 이의가 제기된 후 24시간 이내에 이를 책임 있게 의논하여야 한다.

#### 제29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조치 요구) 과선본 또는 해당 단위의 회원은 과선관위가 제27조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문선관위의 결정·지침을 이행하지 아니할 시 문선관위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5장 선거공고와 입후보 등록

#### 제30조(선거인명부)

- ① 문선관위는 선거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확정 후 해당 과선관위에 공유하여야 한다.
- ②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 소속, 학번, 휴학 여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과선관위가 선거인명부 열람을 완료하면, 문선관위는 이를 확정하고 관리한다.
- ④ 선거공고 후 휴학·자퇴 그 밖에 선거권자의 신상이 변동되는 경우 문선관위는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 제31조(선거공고) 문선관위는 선거일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입후보 등록 마감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제32조(선거운동본부 명칭)

- ① 입후보하고자 하는 선본은 선본의 명칭(이하 "선본명"이라 한다)을 입후보 등록 시 문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선본명에는 "+" , "-"를 제외한 어떠한 기호도 사용하지 아니한다.
- ③ 이외 선본명의 제한 여부는 문운위에서 결정한다.

#### 제33조(선거운동본부 색상)

- ① 입후보하고자 하는 선본은 선본의 색상(이하 "선본색"이라 한다)을 입후보 등록 시 문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선본색의 제한 여부는 문운위에서 결정한다.

#### 제34조(예비등록)

- ① 예비등록은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단체·사람의 기초적인 정보를 사전에 점검하여, 본회에 속한 모든 학생회 선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이다.
- ② 선본장을 준비하는 사람은 선관위가 공고한 예비 등록의 마감 시한까지 공고한 양식에 맞추어 선관위 사무실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구비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선본명
2. 선본색 (RGB 코드)
3. 후보자를 준비하는 사람의 정보
4. 선본장을 준비하는 사람의 정보
- ④ 선거의 예비등록은 총학생회 선거의 예비등록이 마감된 이후에 진행한다.
- ⑤ 선본이 예비등록 시에 제출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등록하는 경우 선관위는 해당 선본에게 "주의" 또는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 ⑥ 예비등록을 하지 않은 선본이 등록을 하는 경우, 선관위는 해당 선본에게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 제35조(선거운동본부 사무실)

- ① 입후보하고자 하는 선본은 선본의 사무실(이하 "선본방"이라 한다)을 각 호의 지역에 각 한 개 이하로 둘 수 있다.
  1. 신촌캠퍼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2. 국제캠퍼스(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5)
- ② 각 선본은 시세협에서 문선관위에 선본방의 사용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③ 선본은 입후보 등록 이전에 해당 사무실의 관리자와 사용에 대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선본방 외에는 선본옷과 제58조에 해당하는 유세 선전물을 비치할 수 없다.
- ⑤ 선본원은 타 선본의 선본방에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 ⑥ 선거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는 선본방으로 사용할 수 없다.
  1. 학생회 공식기구의 사무실(총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그 밖에 이에 준하거나 속하는 학생회 기구) 다만, 동아리의 방은 예외로 한다.
  2. 총학생회에 속한 언론단체의 사무실
  3. 문과대학 학생총회·학생총투표·확대운영위원회 및 문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공식으로 인준한 단체의 사무실
  4. 과·반의 방

#### 제36조(입후보 등록)

- ① 피선거권을 가진 회원 중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단체·사람은 문선관위가 공고한 입후보 등록의 마감 시한 까지 공고한 양식에 맞추어 문선관위 사무실 혹은 문선관위 공식 이메일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7호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약은 8호에 사용할 수 없다. 문선관위 공식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 1호의 인쇄물의 제출은 생략하며, 3호는 pdf 형식의 스캔본으로 대체 한다.
  1. hwp 또는 docx 형식의 입후보 등록원서 파일과 인쇄물
  2. 본회 회원 250인 이상의 추천인 서명서
  3. 정·부후보 재적증명서 각 1매
  4. 정·부후보 흑백 1개, 원본 1개의 사진 이미지 파일(jpg 또는 jpeg 형식)
  5. 성명·학번을 포함한 선본원 명부
  6. hwp 또는 docx 형식의 선거 공약 및 으뜸구호 파일
  7. pdf 형식의 정책자료집(188\*257mm, CMYK, 300dpi)
  8. hwp 또는 docx 형식의 문선관위 포스터용 대표 공약 목록
  9. hwp, docx 또는 xlsx 형식의 선본의 선거운동비용 예산안
- ③ 정후보 1인 혹은 정·부후보 각각 1인의 형태를 갖추어 출마한다.
- ④ 문선관위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후보자 등록을 처리하여야 한다.
  1. 문선관위는 입후보 등록일에 입후보하려는 단체·사람의 구비서류를 심사한 후 등록을 승인한다.

2. 문선관위는 등록된 후보자의 성명과 소속, 선본명을 문선관위에서 정한 입후보 공고일 06시까지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3. 입후보 등록일 당일의 심사시간 동안 구비서류가 미비한 것이 확인될 경우, 문선관위는 해당 선본에 구비서류가 미비하다는 사실을 통지한다. 해당 선본은 통지 시점으로부터 30분 내에 서류를 보충하여 문선관위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선관위는 보충 서류를 접수하고, 해당 선본의 등록이 승인된 후 해당 선본에 "주의"를 조치한다.
4. 선본이 입후보 등록일 18시 이후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문선관위는 해당 선본에 "주의"를 조치하고 등록을 한다.
5. 입후보 등록일 18시 30분 이후에는 등록을 금한다.
6. 문선관위가 해당 단체·사람의 입후보 등록을 승인한 후, 미비한 서류를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접수하였음이 발견될 경우, 선본에 해당 사실을 통지한다. 해당 선본은 통지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미비한 서류를 보충하여 문선관위에 제출한다.

⑤ 입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 및 선본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후보자 및 선본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1. 후보자 전원이 자진 사퇴할 경우
2. 본 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후보자 혹은 선본의 지위가 박탈될 경우

#### 제37조(등록무효)

- ① 입후보 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선본·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3. 제3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
  4. 제36조제4항제6호에 따라 해당 선본이 24시간 이내에 문선관위에 보충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
- ② 선본·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문선관위는 즉시 그 선본·후보자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장 성인지 교육과 인권 교육

제38조(성인지 교육 및 인권 교육의 목적) 문선관위는 모두가 평등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선거를 만들기 위하여, 선거기간 동안 그리고 당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과 인권 침해의 예방을 위하여 선관위원과 선본원에게 성인지교육과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성인지 교육 및 인권 교육의 구성) 성인지 교육은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교육으로 구성된다. 인권 교육은 학내 인권침해 예방 교육으로 구성된다.

#### 제40조(성인지 교육 및 인권 교육의 대상)

- ① 문선관위는 성인지 교육과 인권 교육을 유세 기간 동안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중선관위가 성인지 교육과 인권 교육을 2회 이상 실시할 경우 문선관위는 성인지 교육과 인권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중선관위 혹은 문선관위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과 인권 교육의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문선관위원

2. 문과대학 선거 후보자
3. 문과대학 선거 선본원
4. 과선관위원
5. 과선거 후보자
6. 과선거 선본원

제41조(성인지 교육 및 인권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제재 조치)

- ① 문선관위는 시세협에서 각 선본의 선본원 중 의무로 이수하여야 하는 사람의 비율을 정할 수 있다.
- ② 문선관위는 본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를 이행하지 아니한 선본에게 "주의" 또는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 ③ 과선관위는 과선관위 회의에서 과선관위원과 과선관위 집행부 중 의무로 이수하여야 하는 사람의 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 ④ 과선관위는 시세협에서 후보자와 선본원 중 의무로 이수하여야 하는 사람의 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 ⑤ 과선관위는 본조 제4항에서 정하는 바를 이행하지 아니한 선본에게 "주의" 또는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 제7장 시행세칙 협의모임

제42조(시행세칙 협의모임의 지위) 시세협은 선거를 당해 사정에 맞추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한 협의기구이다.

제43조(시행세칙 협의모임의 구성) 시세협은 문선관위원과 문과대학 학생회 선거운동본부장(이하 "선본장"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44조(시행세칙 협의모임의 역할)

- ① 문선관위는 시세협을 통해 각 선본의 의견을 존중하고 문과대학 각 선본 간 의견을 적극 중재한다.
- ② 각 선본은 시세협에서 선본방 사용을 합의한다.
- ③ 각종 공고와 선전물, 유세에 후보자의 학년과 학번 중 무엇을 표기할지 결정한다.
- ④ 시세협에서 결정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준한다. 단, 시세협에서는 본 세칙과 모순되는 사항을 결정할 수 없다.

제45조(시행세칙 협의모임의 운영)

- ① 문선관위원장은 시세협의 소집권한을 가지며 정기소집일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시세협을 소집한다. 다만, 그 외에도 긴급한 경우 시세협을 소집할 수 있다.
  1. 입후보 등록일
  2. 합동유세의 전날
  3. 투표의 전날
  4. 개표의 전날
- ② 문과대학 각 선본에서 시세협의 소집을 희망하는 경우 문선관위원장에게 요청하고 문선관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시세협이 소집된다.
- ③ 선본의 선본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시세협에 참석하지 못할 시 선본장직을 선본원 중 1인에게 위임하고 해당 선본원이 시세협에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본장은 선본장직 위임사실을 해당 시세협 개회

1시간 이전에 선관위에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본원은 시세협에 참석할 수 없다. 이 경우 문선관위는 위임사유의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 선본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각 선본은 선본장을 통하여서만 문선관위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 ⑤ 시세협에서의 합의는 만장일치를 기본으로 하되, 그러하지 못한 경우 문선관위는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하여 유권해석 하여야 한다.
- ⑥ 문선관위는 시세협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한 문선관위원과 각 선본장의 확인을 거친 후 보관 및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장 선거운동

### 제46조(선거운동의 정의)

- ① 선거운동은 선거에 임하여 특정 선본을 당선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② 본회 회원은 선본에 참여하여 선거운동본부원(이하 "선본원"이라 한다)으로서 본 세칙에서 제한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47조(선거운동의 구성)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1. 선본·후보자의 개인유세
2. 선본·후보자의 강의실유세
3. 선본·후보자의 합동유세
4. 선본·후보자의 정책토론회
5. 선본·후보자의 정책 및 공약선전
6. 선본·후보자의 모임과 단체 방문
7. 선본·후보자의 온라인 선거운동
8. 학내외 언론에의 보도

### 제48조(선거운동의 기간과 공간)

- ① 선거운동의 기간은 입후보 확정공고일 이후부터 투표전날까지로 한다.
- ② 토요일 15시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 06시까지는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다만, 온라인을 통한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 ③ 그 밖에 선거운동의 시간에 대한 제한은 문선관위에서 심의·결정한다.
- ④ 선거운동은 신촌캠퍼스와 국제캠퍼스 학내에서만 가능하다. 다만, 시세협에서 선거운동공간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 ⑤ 선본이 선거운동의 기간 또는 공간을 어길 경우 문선관위는 의 의도성을 판단하고, 의도적인 경우 "주의" 또는 "경고", 의도적이지 아니하며 과실에 따른 경우 "주의"를 조치할 수 있다.

### 제49조(추천인 서명)

- ① 추천인 서명은 선거운동이 아니다. 하지만 선거 후보자 등록의 과정이므로 세칙에서 일정한 규칙을 둔다.
- ② 선본을 준비하는 사람·단체는 유권자로부터 추천인 서명을 받을 수 있다.
- ③ 선본을 준비하는 사람·단체는 추천인 서명 시 해당 선거의 언급과 정책의 기본 방향에 한정하여 말할 수 있다.

- ④ 선본을 준비하는 사람·단체는 강의실에서 추천인 서명을 받을 수 있다. 강의실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할 경우 해당 사람·단체는 그 내용을 문선관위에게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 ⑤ 선본을 준비하는 사람·단체는 추천인 서명 시 유세 외 선거운동과 선본옷 착용을 금한다.
- ⑥ 선본을 준비하는 사람·단체는 추천인 서명판(이하 "연서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해 문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후보를 준비하는 사람의 사진·성명·약력 및 출마의 변
  - 2. 선본을 준비하는 단체의 명칭·으뜸구호·기치·표시 및 정책의 기본 방향
  - 3. 문선관위에서 배포한 서명용지
- ⑦ 문선관위는 각 연서판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일련번호 뒷자는 20개를 넘을 수 없다.
- ⑧ 문선관위는 21개 이상의 연서판을 적발하였을 경우, 해당 단체가 선본으로 등록된 후 해당 선본에 "주의" 또는 "경고"를 조치한다.
- ⑨ 모든 연서판에는 문선관위 명의의 인증표식이 있어야 한다.
- ⑩ 모든 연서판은 각 선본에서 준비한다.
- ⑪ 연서판은 고정선전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정선전물로 비치하거나 연서판을 분실하였을 시 해당 단체가 선본으로 등록된 후 "주의" 혹은 "경고" 조치한다.
- ⑫ 온라인으로 추천인 서명을 진행할 경우 각 선본은 진행 여부와 그 형식을 문선관위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 ⑬ 이 밖에 추천인 서명의 세부지침은 시세협에서 다룬다.

#### 제50조(선거운동본부원)

- ① 선본원은 선본에 소속한 사람으로서 세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 ② 선본원은 본회 회원 중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문선관위에 등록한 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③ 휴학생이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각 선본은 문선관위에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재적증명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선본원 등록기간은 첫 번째 시세협에서 결정한다.

#### 제51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1. 선관위원 및 선관위 집행부
  - 2. 학생회 공식지위에 있는 사람(총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과·반 학생회 및 동아리연합회 그 밖에 이에 준하거나 속하는 학생회 기구의 대표자와 집행부)
  - 3. 본회에 속한 언론단체의 구성원
  - 4. 학생총회·학생총투표·확대운영위원회 및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공식으로 인준한 단체에 소속한 사람
  - 5.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람
- ② 선거권을 갖지 않은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③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확대운영위원회 혹은 문과대학 확대운영위원회의 자격을 갖게 되는 선거에 입후보한 자는 문과대학 학생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문과대학 학생회 입후보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 제52조(선거운동을 위한 사퇴)

- ① 제5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위에서 사퇴하여야 한다.
- ② 문선관위는 입후보 등록의 마감일 7일 전까지 사퇴서 양식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당사자는 문선관위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문선관위는 사퇴서 수령 후 24시간 이내에 당사자에게 수리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양식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작성한 사퇴서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 ⑤ 사퇴한 사람은 절차를 준수하여 선본원으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⑥ 사퇴서 수리기간은 첫 번째 시세협에서 결정한다.

#### 제53조(학생회 및 언론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특정 후보자나 선본에 대한 지지나 비방을 할 수 없다.
  1. 학생회 공식기구(문과대학 학생회, 각 과 학생회, 동아리연합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거나 속하는 학생회 기구)
  2. 본회에 속한 언론단체
  3. 문과대학 학생총회·학생총투표·학대운영위원회 및 문과대학운영위원회에서 공식으로 인준한 단체
- ② 본회 회원은 본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이하 본조에서 "해당 단체"라 한다)의 선거운동을 발견할 시 문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문선관위는 심의를 거쳐 해당 단체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문선관위는 해당 단체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4조(선거운동비용의 제한과 공개)

- ① 문선관위는 선거운동에 쓰이는 비용의 한도를 첫 번째 시세협에서 협의하고 결정한다.
- ② 문선관위는 선본이 문선관위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해당 선본에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 ③ 각 선본은 선거운동비용의 결산을 증빙자료(영수증)를 첨부해 투표 전날 09시부터 투표 마감일 18시까지 문선관위가 지정한 장소와 문선관위 온라인 사이트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④ 문선관위는 본조 제3항을 위반한 선본에는 "주의" 조치를, 투표 첫날 9시까지 게재하지 아니한 선본에는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 제55조(설문조사와 서명운동)

- ① 선본은 선거운동기간 중 설문조사나 서명운동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문선관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시세협에서 설문조사와 서명운동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문선관위에서 결정한다.

#### 제56조(그 밖의 사항) 이외 선거운동과 관련한 사항은 문선관위에서 심의 후 문운위에서 의결한다.

### 제9장 유세 및 선전

#### 제57조(유세) 유세는 개인유세·강의실유세·합동유세·온라인 선거유세·언론을 통한 선거유세 및 정책토론회로 이루어지며 입후보 확정공고일 06시부터 투표 전날 18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문선관위의 지침에 따라 방법이 제한될 수 있다.

#### 제58조(유세 선전물)

- ① 유세의 선전물은 문선관위 포스터, 종형선전물, 인쇄매체, 현수막, 입간판, 피켓 및 선본옷에 한한다.
- ② 문선관위는 선본의 선전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선본의 선전물을 제거하거나 해당 선본에 "경고"를 조치할 수 있고 이를 본회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단, 5호의 경우 인

쇄매체 및 선본옷은 예외로 한다.

1. 선전물의 내용을 사진·그림 및 글 등으로 구성
2. 문선관위에서 지정한 장소에 부착
3. 문선관위에서 허가한 소품만을 개인유세에 사용
4. 문선관위의 도장을 찍어 승인

③ 선본의 선전물 부착 순서는 입후보 등록 이후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④ 인쇄매체는 다음 각 호로 제한하며 1,2호를 합하여 3종으로 제한한다. 각 종의 부수는 시세협에서 정한다.

1. 다음 각 목을 준수한 신문

- 가. 신문은 신문용지 크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면수는 4면 이하로 한다.
- 나. 흑백으로 하며 재질은 신문용지 이하(80g 이하, 코팅금지)로 한다.
- 다. 디자인 및 출력은 각 선본에서 한다.

2. 다음 각 목을 준수한 리플렛

- 가. 리플렛의 크기는 A4(210\*297mm) 3매 이하로 한다.
- 나. 흑백으로 인쇄하며, 재질은 아트지 또는 스노우지로 한다.
- 다. 코팅은 하지 않는다.
- 라. 디자인 및 출력은 각 선본에서 한다.

⑤ 각 선본은 문선관위에서 정한 날 06시부터 다음 각 호를 준수한 중형선전물을 부착할 수 있다.

1. 중형선전물은 A0 전지 2매(840\*2376mm)의 크기로 한다.
2. 중형선전물을 출력할 시 색상은 총천연색 4도 이하로 한다.
3. 중형선전물의 종류는 두 종류까지 허용하며 한 종류 당 허용개수는 문선관위 회의에서 정한다.
4. 중형선전물의 디자인은 각 선본에서 하고 출력과 설치는 문선관위가 한다.
5. 설치일시 및 장소는 시세협에서 결정한다.

⑥ 문선관위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한 현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1. 현수막에는 후보자의 성명·소속 및 학년(학번), 선본의 명칭·으뜸구호가 포함되며 사진·약력·정책 등 그 밖의 사항의 포함 여부는 시세협에서 결정한다.
2. 현수막은 선거기간 중 1회 제작하며 신촌 캠퍼스와 국제 캠퍼스에 각 1개씩 규격과 재질을 동일하게 한다.
3. 문선관위는 각 선본의 현수막을 일괄적으로 제작한다.
4. 설치일시 및 장소는 시세협에서 결정한다.
5. 현수막의 디자인은 각 선본에서 하고 제작과 설치는 문선관위가 한다.

⑦ 각 선본은 선거운동에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피켓을 사용할 수 있다.

1. 피켓의 크기는 4·6판계열 4절(545\*788mm) 이하이며 개수는 10개 이하, 재질은 우드락으로 한다.
2. 바탕색상은 선본색으로 하며, 출력·부착하되 후보자의 사진은 부착할 수 없다.
3. 피켓의 내용은 선거운동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일괄 교체할 수 있다.
4. 우천 시를 대비하여 투명한 비닐소재로 포장할 수 있다.
5. 피켓은 항시 선본원이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선본원이 없는 곳에 방치할 수 없다.

⑧ 선본옷의 바탕색은 선본색으로 하며 나염은 총 두 가지 색상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염은 등과 왼쪽 가슴 부위에 인쇄할 수 있다.

⑨ 피켓 및 선본옷을 제외한 유세 선전물에는 반드시 투표 독려 문구를 삽입하여야 한다. 투표 독려 문구의 내용과 크기는 시세협에서 협의한다.

⑩ 모든 선전물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문선관위의 승인을 거친 후 사용할 수 있다.
2. 신문, 리플렛, 피켓 및 선본옷은 선본방을 제외한 장소에 비치할 수 없다. 단, 신문 및 리플렛은 시세협

에서의 협의를 통해 비치장소 및 기간을 정할 수 있다.

3. 1호 및 2호를 어길 경우 문선관위는 유권해석에 따라 선본에 "주의" 또는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4. 모든 현수막 및 중형선전물은 시세협에서 정하는 날 06시부터 부착하기 시작하여 각 선본에서 시세협에서 정하는 날 19시까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 제59조(정책자료집)

- ① 정책자료집은 각 선본에서 문선관위에 입후보 마감 시한까지 제출하고 문선관위가 합본하여 출력한다.
- ② 정책자료집의 분량은 선본당 시세협에서 정하는 쪽수 이하로 제한한다.
- ③ 출력비는 문과대학 학생회비의 "선거공영비"에서 전액 부담한다.
- ④ 각 선본은 정책자료집에 명시한 해당 선본의 정책만을 정책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표현의 미세한 차이는 문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따른다.
- ⑤ 문선관위는 선본이 정책자료집을 개인 유세를 위한 물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선본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⑥ 문선관위는 정책자료집을 문선관위 회의에서 지정한 장소에 정해진 부수로 비치하여야 한다.
- ⑦ 자료집에 실리는 각 선본의 글 순서는 시세협에서 결정한다.

#### 제60조(온라인 선거유세) 인터넷과 휴대폰 그 밖의 온라인을 통한 선거유세의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문선관위 온라인 사이트에 각 선본의 게시판을 개설한다.
2. 온라인 사이트의 내용은 본회 회원의 의견개진과 후보자의 정보, 정책자료집, 선본의 의견 및 홍보 등으로 구성한다.
3. 각 선본은 문선관위의 승인을 거친 후 선전물을 게시할 수 있으며 선전물의 종류와 크기, 게시 횟수, 구체적인 게시처 그 밖의 사항은 시세협에서 합의한다.
4. 그 밖의 사항은 시세협에서 정한다.

#### 제61조(언론을 통한 선거유세) 언론을 통한 선거유세의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학내 언론단체를 통한 보도를 허용하며 그 밖의 매체를 통한 보도 여부는 문선관위에서 결정한다.
2. 학내 언론단체는 각 선본의 공약·정책을 논평할 수 있다. 단 후보자 신상에 대한 비방이나 공약·정책에 대한 비난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제62조(합동유세와 정책토론회)

- ① 합동유세와 정책토론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되며 실시 여부 및 세부적인 일정과 장소는 시세협에서 정한다. 다만, 급작스러운 우천 시 또는 이의가 있을 경우 시세협을 통해 일정과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1. 신촌캠퍼스 1차 합동유세
  2. 국제캠퍼스 합동유세 및 정책토론회
  3. 신촌캠퍼스 정책토론회
  4. 신촌캠퍼스 2차 합동유세
- ② 합동유세 순서는 입후보 등록 이후 시세협에서 일괄적으로 추첨하여 결정한다.
- ③ 각 선본의 후보자들은 유세시간 중 발언을 할 수 있다. 다만, 합동유세의 시작 10분 전까지 후보자가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후보자가 발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④ 문선관위는 선본·후보자의 수를 고려하여 합동유세의 시간을 결정한다. 다만, 한 선본의 유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문선관위는 선본이 유세시간을 20분 초과할 시 앰프의 전원을 차단하고, 25분을 초과할 시 "경고"를 조

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후 5분을 초과할 때마다 추가로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 ⑥ 문선관위는 정책토론회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 ⑦ 문선관위는 정책토론회를 실시할 경우 언론출판협의회와 협력하여 정책토론회를 진행할 수 있다.
- ⑧ 합동유세 및 정책토론회의 전반적인 진행은 문선관위에서 한다.

#### 제63조(합동유세 중 유세 금지)

- ① 합동유세 시간동안 문선관위가 지정한 유세장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의 문과대학 학생회 선거유세를 전면 금한다. 다만, 선본옷의 착용은 허용한다.
- ② 각 선본은 자신의 유세시간에만 유세장에 선전물을 배포할 수 있다.
- ③ 문선관위는 다른 선본의 유세시간에 선전물을 배포, 깃발 흔들기, 구호 외치기 및 그 밖의 선거운동을 하는 선본에 "주의"를 조치할 수 있다.

#### 제64조(허위사실 유포와 기재에 대한 제재 조치)

- ① 선본이 선전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선본은 문선관위가 지정한 일시까지 문제가 된 부분을 전량 교체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 ② 후보자, 선거운동원이 강의실 유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해당 선본은 익일 08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진행하는 강의실 유세에서 정정 발언을 해야 한다. 단, 허위사실 유포 시점이 목요일 혹은 금요일일 경우 그 다음 주 화요일 08시 혹은 수요일 08시까지 정정 발언을 해야 한다.
- ③ 문선관위는 허위사실 기재와 유포, 사후 대응에 대해 "주의" 또는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 제10장 투표

#### 제65조(투표절차)

- ① 투표는 전자투표로 진행하되,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점자투표용지로 진행할 수 있다.
- ② 문선관위는 투표의 상세한 절차를 투표시행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제66조(점자투표용지) 점자투표용지의 내용과 크기는 문선관위에서 정한다.

#### 제67조(투표구의 지정)

- ① 문선관위는 투표 절차의 상세한 안내와 시각장애인용 투표소 설치를 위해 투표구를 지정한다.
- ② 투표구는 다음 각 호에 1개 이상 지정한다.
  1. 신촌캠퍼스
  2. 국제캠퍼스
- ③ 문선관위는 투표구의 구분을 확정하고 투표시행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④ 문선관위는 중선관위의 승인 하에 중선관위 투표구를 사용할 수 있다.

#### 제68조(투표기간) 문운위는 선거기간 중 3일을 투표기간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제69조(투표기간의 연장) 문선관위는 제68조에 따른 투표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투표기간을 하루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제70조(투표시간) 문선관위는 투표기간에 한하여 투표시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71조(투표시간의 연장) 문선관위는 제68조에 따른 투표 최종일과 제69조에 따른 연장일에 한하여 투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2조(투표소의 설치)

- ① 문선관위는 지정한 투표구마다 투표소를 한 개 이상 설치할 수 있다.
- ② 문선관위는 투표소의 설치 장소를 확정하고 투표시행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③ 투표소의 입구와 출구는 투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입이 가능하다.
  - 1. 해당 투표소의 선관위원
  - 2. 해당 투표소의 선관위 집행부
  - 3. 해당 투표소의 참관인
  - 4. 장애학생이 투표할 때의 동행한 도우미
- ④ 문선관위원과 문선관위 집행부, 참관인은 해당 투표소에 상주하여야 한다.
- ⑤ 문선관위는 필요시 투표구에 설치한 한 개 이상의 투표소에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기표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3조(투표소 운영시간) 문선관위는 투표소별 운영시간을 결정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74조(투표소의 선전물) 투표소에는 투표 절차와 유의사항, 문선관위가 제작한 포스터만을 부착할 수 있다.

제75조(투표자의 확인)

- ① 문선관위는 투표자의 확인 방식을 투표의 절차와 함께 투표 시행일 7일 전에 공고한다.
- ② 특정선본의 선본원 또는 선본원의 요청에 의하여 타인이 이중투표나 대리투표를 할 경우, 문선관위는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본회의 회원에게 공개하고 결과에 따라 해당 선본에 "경고"를 조치하거나 후보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76조(투표함) 문선관위는 투표구에 설치한 한 개 이상의 투표소에 점자투표용지용 투표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7조(투표함의 봉인과 보관)

- ① 선관위원은 투표시간 종료 후 참관인과 선관위원의 서명 후 투표함을 봉인하여야 한다.
- ② 선관위는 각 선본의 참관인과 동행하여 봉인한 투표함을 선관위 사무실로 옮긴다. 다만, 개표일에 한하여 각 선거의 개표장으로 옮긴다.
- ③ 선관위는 해당 투표함의 열쇠와 미사용 투표용지를 별도로 수거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 ④ 선관위는 투표함을 선관위 사무실에 옮긴 후부터 투표소로 옮기기 전까지 선관위원의 관리 하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78조(후보자의 투표소 접근 제한) 후보자는 투표를 제외한 때에는 투표소에 접근할 수 없다.

## 제11장 참관인

### 제79조(참관인의 자격)

- ① 각 선본은 투표소 당 1인의 선본원을 참관인으로 배치할 수 있다.
- ② 선관위는 해당 투표소에 배치를 신고한 선본원 1인의 성명과 선본명을 적은 명찰을 제작하여 참관인에게 배부한다. 이 경우 참관인은 이를 부착한 상태에서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③ 동일 선본 내의 다른 선본원은 명찰을 인계받아 참관인의 역할을 대신 수행할 수 있다.
- ④ 각 선본은 시세협에서 협의한 기한까지 문선관위에 투표소 당 참관인 명단과 모든 참관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씩을 선택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재적증명서
  - 2. 학생증
  - 3. 도서대출증
  - 4. 등록금 영수증
  - 5. 그 밖의 재적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 제80조(참관인의 역할)

- ① 참관인은 투표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감독·참관하여야 한다.
- ② 참관인은 각 선본 간 협의에 따라 투표독려행위를 할 수 있다.
- ③ 참관인은 투표소 운영 30분 전까지 선관위원과 함께 선관위 사무실에서 투표함을 투표소로 운반하여야 한다.
- ④ 참관인은 투표 진행 중 투표소를 떠날 수 없다. 단, 문선관위원장의 허가 하에 1시간 이내로 투표소를 떠날 수 있다.

### 제81조(참관인의 제한)

- ① 참관인은 투표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1. 투표를 방해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 2. 특정후보를 지지 또는 비난하거나 선거 선전물을 소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3. 부정행위로 보일만한 행위
  - 4. 그 밖에 선관위에서 부정행위로 규정한 행위
- ② 선관위원은 투표소에서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참관인(이하 이 조에서 "해당 참관인"이라 한다)을 즉시 제지하고 해당 참관인의 행위를 선관위에 보고한다.
- ③ 선관위는 제2항의 사항을 논의하여 해당 참관인에게 퇴장을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관위로부터 퇴장을 조치 받은 참관인은 즉시 퇴장하여야 한다.

### 제82조(참관인의 이의제기)

- ① 참관인은 선관위에 진행상황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참관인이 투표 진행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선관위원은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투표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다만, 한 시간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문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투표를 재개한다.
- ③ 참관인이 해당 투표소에 불참한 선본은 선관위원과 상대 선본의 참관인의 합의로 결정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12장 개표

### 제83조(개표시작과 순서)

- ① 투표가 종료되면 문선관위의 감독과 각 선본장의 입회 하에 선거인명부를 검색하여 투표인명부를 작성한다.
- ②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개표를 시작한다.
  1. 투표인명부 작성의 종료
  2. 투표자수가 유권자수의 과반에 달함
  3. 모든 투표함의 도착
  4. 문선관위원장 및 3분의 2 이상의 문선관위원 참석
  5. 투표함 봉인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

### 제84조(무효투표)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해당 투표구의 선관위가 지정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아니한 것
3. 두 군데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것
4. 어느 란에 기표한 지 투표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것
5. 해당 투표구의 선관위 도장이 없는 것

### 제85조(유효투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유효로 한다.

1. 어느 란에 기표한 지 투표자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는 것
2. 한 후보의 란에 두 개 이상 기표하거나 겹치게 기표한 것
3. 기표란 이외에 기표하였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 제86조(개표일과 개표장소)

- ① 개표일은 문운위에서 결정한다. 다만, 그날 개표가 불가능할 경우 시세협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② 개표 장소는 문선관위에서 결정한다.

### 제87조(오차와 오차율)

- ① 오차는 "명부상의 투표자수와 개표 완료 후 실제 투표자수의 차(절대값)와 이중투표와 대리투표로 확인된 수의 총합"이다.
- ② 오차율은 "오차/전체 선거권자 수×100%"이다.

### 제88조(결선투표)

- ① 개표의 결과 득표수가 1, 2위인 선본 간 표차보다 오차가 클 시 해당 두 선본 간의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 ② 결선투표는 개표 후 7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운동은 하지 않는다.
- ③ 결선투표는 문선관위에서 결정한 투표시간에 준하여 이를 동안 진행하고, 투표율에 상관없이 더 많은 사람이 투표한 선본이 당선한다. 다만, 개표의 결과 해당 두 선본 간 표차보다 오차가 클 시 결선투표를 반복한다.

### 제89조(오차에 의한 재투표)

- ① 단일 선본이 출마한 선거의 경우, 개표의 결과 찬성표와 반대표 간 표차보다 오차가 클 시 재투표를 실

시한다.

- ② 재투표는 개표 후 7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운동은 하지 않는다.
- ③ 재투표는 문선관위에서 결정한 투표시간에 준하여 이를 동안 진행하고, 선본은 투표율에 상관없이 찬성표가 투표수의 과반일 경우 당선한다. 다만, 개표의 결과 찬성표와 반대표 간 표차보다 오차가 클 시 재투표를 반복한다.

#### 제90조(자격박탈에 의한 재투표)

- ① 두 개 이상의 선본이 출마한 선거의 경우, 투표 개시 이후 개표 이전에 하나 이상의 선본이 자격 박탈되면 개표를 진행하지 않고 재투표를 실시한다.
- ② 재투표는 해당 선본의 자격박탈 후 7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운동은 하지 않는다.
- ③ 재투표는 문선관위에서 결정한 투표시간에 준하여 3일 동안 진행하고, 모두 종료한 후에도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투표기간을 하루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개표의 결과 찬성표와 반대표 간 표차보다 오차가 클 시 재투표를 반복한다.

### 제13장 당선공고와 이의제기

제91조(당선공고) 문선관위는 개표 종료 후 24시간 이내로 당선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92조(이의제기)

- ① 문운위는 개표 이후 당선 선본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정한다.
- ② 선본에서 문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선본장이 이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도 제출 가능하다.
- ③ 선본이 본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문선관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문선관위는 해당 선본에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 ④ 본회 회원이 문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도 제출 가능하다.
- ⑤ 문선관위는 선본 또는 본회 회원이 이의를 제기할 시 이를 책임 있게 논의하여야 한다.

### 제14장 선거 부정

제93조(선거 부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 부정이라 한다.

1. 누군가 투표 방해, 이중 투표와 대리 투표를 하거나 그 밖에 투표 과정에 개입·조작한 경우
2. 누군가 개표의 결과를 조작한 경우
3. 후보자가 선관위, 선본원 또는 유권자에게, 선본원이 선관위 또는 유권자에게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금품을 제공한 경우
4. 그 밖의 위 사항에 준하는 중대한 부정이 발견된 경우

#### 제94조(선거 부정의 판단)

- ① 문선관위와 문운위는 이의제기 기간 중 선거 부정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 ② 문선관위가 누군가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고 판단할 경우 문운위에 "선거 부정 판단의 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 ③ 문운위는 본조 제2항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관련한 안건을 논의하여야 한다.
- ④ 문선관위와 문운위는 선거 부정을 결정하기 이전에 의심되는 사건의 경위를 명백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 ⑤ 문선관위와 문운위는 선거 부정에 관한 안건을 책임 있게 논의하여야 하며 모든 경과를 본회의 회원과 각 선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⑥ 문선관위와 문운위는 선거 부정의 안건을 논의할 때에 해당 선본의 선본장을 배석하여 해명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 제15장 당선무효

제95조(당선무효) 문운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논의를 거쳐 선본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 1. 제93조에 따라 선본의 당선 이후 선거 부정이 발견된 경우
- 2. 제99조에 따라 선본의 자격이 박탈된 경우
- 3. 당선 선본이 당선을 포기한 경우

제96조(당선무효의 공고) 문운위는 당선무효의 결정 이후 24시간 이내에 시기와 사유를 본회의 회원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제16장 재선거

제97조(재선거)

- ① 문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선거 실시를 의결할 수 있다. 다만, 3호와 4호의 경우 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리를 완료한 이후에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오차율이 5% 이상인 때
  - 2. 연장투표 후에도 투표율이 50%를 넘지 아니한 때
  - 3. 선거 부정이 발견된 때
  - 4. 당선 선본의 당선이 무효로 된 때
- ② 재선거가 결정될 시 문운위는 7일 이내로 재선거와 관련한 사항을 논의하여야 한다.

## 제17장 선거의 종료

제98조(문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

- ① 문선관위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의 제반 업무를 모두 마치고 해산한다.
  - 1. 선본의 당선을 확정하여 공고하는 경우
  - 2. 당선한 선본이 없음을 공고하는 경우
- ② 문선관위의 해산으로 선거는 종료된다.

## 제18장 징계

제99조(선거운동본부·후보자의 자격박탈) 문운위는 선본·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선관위의 심의를 거쳐 선본·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선본이 3회의 "경고"를 조치 받은 경우
2. 선본이 문선관위의 조치에 의도적으로 불응하거나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아니할 경우

제100조(제재 조치)

① 문선관위는 선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본에 "주의" 또는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1. 이 세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선관위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선거에 위해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② 선본이 본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동시다발적이거나 연속적으로 저지른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선관위가 사건의 발생으로부터 24시간 이후에 접수한 은 무효로 한다.
2. 선관위가 최초로 접수한 A에 대해 접수로부터 24시간 이내 또는 제재를 조치하기 전까지 추가로 접수한 동일한 은 A과 하나의 으로 한다.
3. 선관위가 A에 대해 조치한 이후 발생한 동일한 을 접수할 경우 이는 A과 별개의 으로 한다.

③ 문선관위는 의도성과 의 경중에 따라 선본에게 "주의"와 "경고"를 구분하여 제재를 조치하여야 한다.

④ 문선관위는 선본이 "주의"를 조치 받은 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을 반복하는 경우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⑤ 문선관위는 선본이 3회 "주의"를 조치 받은 경우 "경고"로 전환한다.

⑥ 문선관위는 "경고"를 조치 받은 선본의 포스터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경고장을 부착한다.

1. 경고장에는 "경고"의 사유, 위반한 시행세칙 조항 전문 및 조치 시기를 기재하여야 한다. 내용은 시세 협에서의 협의 하에 추가될 수 있다.
2. 경고장은 A4용지 크기(297\*210mm)로 한다.
3. 첫 번째 경고장은 바탕색에 노란색을, 두 번째 경고장은 빨간색을, 세 번째 경고장은 검은색을 사용한다.
4. 다음 날 08시부터 48시간 동안 부착한다. 다만, 토요일 15시부터 다음 주 월요일 06시까지는 선거를 중단하므로 부착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문선관위는 이 기간 동안 경고장을 철거한다.
5. 경고장 부착 기간이 투표기간과 겹칠 경우 경고장을 투표소에 부착한다.

⑦ "경고"를 조치 받은 선본은 다음날 08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진행하는 강의실유세에서 경고 사유에 대한 발언을 하여야 한다.

## 제19장 문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

제101조(회계기간) 선거의 회계기간은 문선관위의 구성일로부터 선거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02조(문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원)

- ① 선거관리비용은 문과대학 학생회비의 "선거공영비"를 통하여 조달한다.
- ② 문선관위는 필요한 경우 회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거공영비의 증액 (또는 감액)의 안"을 문운위에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운위의 의장은 3일 이내에 문운위를 소집하여 해당 안건을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

#### 제103조(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비용)

- ① 각 선본은 입후보 등록 시 선거운동 비용 예산안을 책정하여 문선관위에 제출하고 문선관위의 심의를 받는다. 이때, 심의는 직전 3번의 선거 당시의 각 선본의 선거운동비용 결산을 기준으로 한다.
- ② 각 선본의 선거운동비용은 문과대학 학생회비의 "선거공영비"를 통하여 전액 지원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운동비용의 1/3만 지원한다.
  1. 개표 후 선본의 최종 실득표율이 15%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
  2. 투표율이 50%에 미달하여 개표하지 못하는 경우
- ④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운동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1. 후보자 전원이 자진 사퇴할 경우
  2. 이 세칙이 정하는 경우에 의해 선본의 자격이 박탈될 경우
- ⑤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역 혹은 초과액에 대해서는 선거공영비에서 지원하지 않는다.
  - 3, 4, 5호의 경우 해당 물품의 선거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시세협에서의 협의 하에 지출금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선본옷 구매 내역
    2. 선거운동용 사진촬영 비용 지출 내역
    3. 선거에 사용된 물품이 선거 종료 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문선관위가 판단한 내역
    4. 선거운동과 관련이 없다고 문선관위가 판단한 내역
    5.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미비하다고 문선관위가 판단한 내역
    6. 시세협에서 정한 각 선본 지원액 한도에 대한 초과액
- ⑥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시세협에서의 협의 하에, 초과분에 대하여 각 선본 간 분담금을 정할 수 있다.
  1. 시세협에서 정한 선거비용 총액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2. 각 선본의 선거운동비용 총액의 합이 선거공영비 총액과 문선관위의 선거비용의 차를 초과하는 경우
- ⑦ 문선관위는 각 선본에 비용부담이 최대한 가지 않도록 분담금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⑧ 문선관위는 투·개표 일정 종료 이후 2일 내에 시세협을 소집하여 각 선본의 결산을 심의하고 각 선본에 대한 선거공영비 지원액을 산정한다. 산정 이후 24시간 내에 각 선본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선거공영비 지원액은 확정된다.
- ⑨ 각 선본이 산정된 최종 선거공영비 지원액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문선관위는 지체 없이 "선거공영비 지원액 조정 및 확정의 안"을 문운위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운위 의장은 3일 이내에 문운위를 소집하여 해당 안건을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
- ⑩ 모든 선본에 대한 선거공영비 지원액이 확정되고 제92조에 따라 정해진 이의제기 기간이 종료되면 문선관위는 지체 없이 각 선본에 지원액을 전달한다.

#### 제104조(문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

- ① 문선관위는 선거의 예산을 편성하여 선거 공고일 전까지 문운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문운위는 선거의 예산을 심의·검토하고 이를 문과대학 학생회비의 "선거공영비"로 지출할 것을 의결한다.
- ③ 예산의 편성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을 수정할 경우 문선관위는 이를 결산에 반영하고 표시하여야 한다.

#### 제105조(문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산)

- ① 문선관위는 문운위에서 결정한 방식에 따라 결산을 본회의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② 문선관위는 각 항목별로 결산내역의 증빙자료를 정리하여 차기 문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③ 문선관위는 선거의 결산을 선거의 종료일 이후 시행하는 첫 번째 문운위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 부칙

제1조(세칙의 효력 발생) 이 세칙은 2018년 10월 31일 제55대 문운위의 의결에 따라 전면 개정되었으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세칙의 효력 발생) 이 세칙은 2019년 10월 30일 제56대 문운위의 의결에 따라 일부 개정되었으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세칙의 효력 발생) 이 세칙은 2020년 4월 8일 제57대 문운위의 의결에 따라 일부 개정되었으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세칙의 효력 발생) 이 세칙은 2020년 10월 28일 제57대 문운위의 의결에 따라 일부 개정되었으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세칙의 효력 발생) 이 세칙은 2021년 10월 27일 제58대 문운위의 의결에 따라 일부 개정되었으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세칙의 효력 발생) 이 세칙은 2022년 3월 15일 제59대 문운위의 의결에 따라 일부 개정되었으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세칙의 효력 발생) 이 세칙은 2022년 10월 26일 제59대 문운위의 의결에 따라 일부 개정되었으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